

빅데이터 소화기혁신연구비 규정

제1조(명칭) 본 연구비는 빅데이터 연구자를 위한 연구비로서 명칭은 빅데이터 소화기혁신연구비로 한다.

제2조(목적) 본 규정은 빅데이터 연구를 시작하는 연구자를 위한 연구비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지원 방법 및 금액): 본 연구비는 빅데이터 신진 연구자들에게 연구 인력 지원 및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용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집행된다.

제4조(연구 대상자의 자격): 대한소화기학회 평생 회원으로 국가 공익과 관련된 빅데이터 연구 주제 및 계획이 있어야 하며 동일 내용의 연구과제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연구비 또는 학술상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.

제5조(지원 대상의 추천): 연구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대한소화기학회 평의원 1인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.

제6조(지원 신청):

제1항: 지원 신청은 대한소화기학회 홈페이지에 공고한다.

제2항: 본 연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지정한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신청서(소정양식)
2. 추천서(평의원 1인)
3. 이력서
4. 연구업적목록 (최근 5년간 대표업적 10개 이내)
5. 연구계획서
6. 기타 심사에 필요한 증빙자료

제7조(연구비 운영):

제1항: 본 연구비는 연구자에게 연구비를 직접 지원하지 않고, 학회에서 연구자에게 연구 인력 지원 및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용 비용을 지급하는 식으로 집행된

다.

제2항: 대한소화기학회에 연구비 운영위원회를 두고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.

가) 기금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일

나) 연구비 심사 및 선정

제3항: 운영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되며 이사장이 위원장이 되고, 총무이사, 학술이사, 재무이사, 빅데이터근거의학위원장은 위원이 된다.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대한소화기학회 회칙이 정한 이사의 임기에 따른다.

제 8 조 (연구비 지원대상자의 선정)

제1항: 지원대상자의 심의는 운영위원회에서 한다.

제2항: (심사절차) : 대한소화기학회 연구비 심사 기준(심사배점표)을 기반으로 심사하여 연구비 지원대상을 결정한다. 필요에 따라 전문가의 자문을 청할 수 있으며,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제9조 (연구비 선정 공고) 연구비에 선정된 연구자 및 과제를 대한소화기학회 홈페이지에 공고하고, 대한소화기학회 정기총회 석상에서 시상한다.

제10조 (연구비 수혜자의 의무)

제1항 (연구결과 보고의 의무): 본 연구비의 수혜자는 연구 개시(연구 지원 인력 인건비 지급 시작 시점) 2년 내에 연구 결과를 본 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구연 발표하여야 하고, 연구 개시 3년 내에 SCI(-E) 공인 국제학술지 또는 대한소화기학회지에 대한소화기학회에서 지원 받았음을 아래와 같이 명시한 논문을 게재하고 PDF 파일을 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국문: 본 연구는 0000년도 대한소화기학회 빅데이터 소화기혁신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

영문: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Big data GI-Innovation Fund from the Korean Society of Gastroenterology in 0000.

제2항: (연구결과 미보고시 불이익): 연구 개시 3년 내에 최종 논문 (in press 포함)이 발표되지 못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유를 서면으로 학회에 제출하여야 하며, 운영위원회에서 사유서를 심사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. 타당한 사유 없이 연구 개시 3년 내에 최종 논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학회는 연구자를 위해 지출된 연구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납 요구할 수 있다. 상기의 경우 향후 대한소화기학회 연구비 응모를 연구

개시일로부터 6년간 제한한다.

제11조 (부칙)

제1항 :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하거나 운영위원회의 결의로
별도 내규를 정할 수 있다.

제2항 : 본 규정은 대한소화기학회 이사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하며 대한소화기
학회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

재정: 2024. 04. 17

개정: 2026. 07. 15